

제 목	국 문	지역보건관리에 있어서 지방자치조례의 역할과 개선안		
	영 문	A Study on the role and the idea for the rule of the autonomous municipal Organization in health management		
저 자 및 소 속	국 문	정 영 원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 보건소		
	영 문	Young won Jung <i>Wan san health center, Jeon joo si, Jeon ra book Do</i>		
분 야	보건관리		발 표 자	정영원
발표 형식			발표 시간	10분
진행 상황	연구완료 (), 연구중 (√) → 완료 예정 시기 : '95년 12 월			

1. 연구 목적

주민보건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지방자치조례와 지방자치사무의 확정 그리고 사무수행조직(보건소)을 통하여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건에 관한 법률 제·개정 등에 따른 변화에 부응할 수 있고 좀더 발전적인 주민보건관리를 위한 조례안을 제시하고자 함.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필요한 역할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 기능을 발휘할 조직의 분석과 구성에 역점을 두었음.

2. 연구 방법

지방자치와 의료에 관한 문헌과 헌법을 비롯한 실정법규들을 분석 정리를 하였다.

3. 연구결과

- 1) 주민보건관리의 대부분을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있고, 보건소의 주민보건관리는 법령에 근거한 위임사무와 자치사무를 바탕으로 규정되는 자치조례와 자치규칙 및 자치규정에 의해 관리의 범위와 방법 등이 결정된다. 따라서 주민보건관리의 성과나 효율성은 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 및 규정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 2) 그러나 단위사무 기준이 모호하여 같은 기초지방자치단체임에도 지방에 따라 보건소의 사무를 152개의 단위사무와 60개의 단위사무로 획정하는 등 너무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획정된 단위사무중 80%이상이 위임사무로 구분되고 있으나 경비부담에 있어서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경비는 95%를 상회하고 있는데, 이들은 보건소의 사무처리가 조직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며 이는 주민보건관리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앓고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
- 3) 이러한 근본원인은 보건소법으로 단체위임된 사무나 자치사무처리를 위한 자치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고 단지 보건소운영조례인 조직조례만으로 보건관리를 하고 있으며, 새로 제정되는 보건에 관한 법규들고 이 들을 간파하고 있다.
- 4) 뿐만아니라 지방자치법의 지방조직에 대한 특별법인 보건소법으로 보건소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사실상 조례에 의한 조직을 완성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보건소의 조직은 조직이 원리가 무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정 인력도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예산편성시 예산구조가 잘못되어 예산확보에 장애가 되고 있는 등 잘못된 보건소기관운영은 더욱 더 보건관리의 효율성을 감소시키고 있다.

4. 고찰

따라서 지방주민보건관리에 필요로하는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기능을 발휘할 조직과 사무분담 및 처리를 위한 기초지방조례를 제·개정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최소한 보건소법에 명시된 단체위임사무와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자치 사무의 구체적인 한계·절차·시행방법 등이 규정되어야 한다.